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양식 제1호]

[様式第1号]

출생신고서 出生届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をつけてください。				
(년 월 일) (年 月 日)								
① 출생 자 ① 출 생 者	성명 氏名	*한글 *ハン グル	(성) / (명) (氏) / (名)	본 本貫 (한자) (漢字)		*성별 *性別	(1)남 男 (2)여 女	* (1)혼인 중의 출생자 * (1)婚内子 * (2)혼인 외의 출생자 * (2)婚外子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 연월 일시 *出生日時		년 월 일 시 年 月 日 時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分 (出生地の時刻: 24時間制)			
	*출생 장소 *出生地		(1)주택 (2)병원 (3)기타 (1)自宅 (2)病院 (3)その他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父母が決めた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세대주 및 관계 世帯主及び関係	의 の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子が多重国籍者の場合、その事実及び取得した外国の国籍							
② 부모 ② 父 母	부 父	성명 氏名	(한자:) (漢字:)	본 (한자) 本貫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모 母	성명 氏名	(한자:) (漢字:)	본 (한자) 本貫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부의 등록기준지 *父の登録基準地							
	*모의 등록기준지 *母の登録基準地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婚姻届を提出する際、子の氏と本貫を母の氏と本貫にする協議書を提出しましたか? はい ☐ いいえ ☐								
③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③ 親子関係不存在確認判決等による家族関係登録簿が閉鎖された後、改めて出生届をする場合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閉鎖登録簿上の特定事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④ 기타 사항 ④ その他の事項					
⑤ 신고인 ⑤ 届出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격 *資格	(1)부 (2)모 (3)동거친족 (4)기타(자격:) (1)父 (2)母 (3)同居の親族 (4)その他 (資格:)			
	주소 住所				
	*전화 電話番号		이메일 電子メール アドレス		
⑥ 제출인 ⑥ 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を記載させ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米印(*)の資料**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き誠実に回答す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事項は厳重に保護されますので事実を正確に記入してください。
-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添付書類及び出生者の父母の国籍は国の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ま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 최종 졸업학교 イ. 最終 学歴	부 父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1) 学歴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모 母	(1) 학력 없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이상 (1) 学歴なし (2) 小学校 (3) 中学校 (4) 高校 (5) 大学 (6) 大学院以上

-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下記の事項は届出人が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읍면동접수 邑・面・洞で受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家族関係登録官署に送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家族関係登録官署で受付及び処理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년 월 일(인) 年 月 日 (印)	

작성방법 作成方法

-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欄①: 出生者の氏名に使われる漢字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範囲内のもの(人名用漢字)で、名は5字(氏は含まない)を超えてはなりません。使用できる人名用漢字については大韓民国の裁判所の電子民願センターで確認できます。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生まれた時間は24時間制で記入してください(例: 午後2時30分→ 14時30分)。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韓国の国民が外国で生まれた場合は、その現地の出生時間を西暦及び太陽暦で記入し、サマータイム実施期間中に生まれた場合は、その出生地の時間の横に「(サマータイム適用)」と記入してください。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子が多重国籍者の場合はその事実及び取得した外国の国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出生地は最小の行政区域の名称(市・区の「洞」、邑・面の「里」)又は道路名住所の「道路名」までのみ記入しても構いません。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 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欄②: 父に関する事項 - 婚外子を母が届け出る場合は記入せず、前の婚姻の解消後100日以内に再婚した女性が再婚成立後200日以降、直前の婚姻の終了後300日以内に出産して母が出生届を提出する場合は、父の氏名欄に「父不明」と記入してください。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欄③: 親子関係不存在確判決、親子否認判決等で家族関係登録簿が閉鎖された後、改めて出生届を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欄④: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へ明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後順位の届出義務者が出生届を提出する場合: 先順位者(父母)が届け出ることができない客観的理由(例: 父母の死亡、行方不明等)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生まれる前に胎児を認知した事実及びその届出を行った官署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外国人である父の氏に従って外国語の氏名で外国の登録官署に登録されているが、ハングルの氏名で出生届を提出する場合外国で届出書が提出されている氏名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欄⑥: 提出者(届出人が記入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者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明書との照合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㉔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イ. 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入し、各学校における在学又は中退者は最終的に卒業した学校の当該番号に「○」をつけてください。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예> 大学3年在学中(中退) → (4) 高校に「○」をつける

첨부서류 添付書類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1. 出生証明書等1通 (次のいずれも可)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医師や助産師が記入した出生証明書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별지 서식)
- 医師や助産師ではない者で、分娩に直接関与した者が母の出産を証明できる資料等を添付して記入した出生事実を証明する書面(「出生届に添付する出生証明書に関する処理指針」の別紙書式)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国内又は外国の権限ある機関で発行した出生事実を証明する書面(外国語の場合は訳文を添付)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家庭裁判所の確認書謄本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以下の第2項及び第3項は、家族関係登官署にて情報システム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てください。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出生者の父又は母の婚姻関係証明書1通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父が婚外子の出生届を提出する場合は必ず母の婚姻関係証明書を添付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 出生者の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いか、又は登録されているか不明な者の場合はその母が既婚者ではないことを公証する書面又は2人以上の近隣知人による保証書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3. 子が生まれたときに母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例: 母の基本証明書) 1通(1998年6月14日以降、外国人の父と韓国人の母の間に生まれた子の出生届を提出する場合)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4. 子が生まれたときに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父又は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いか不明の場合は、父又は母の氏名、生年月日等基本事項を証明する韓国の官公署が発行した公文書の写し1部(例: 旅券、住民登録謄本、その他の証明書)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子が多重国籍者の場合、取得した国籍を証明する資料1部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6. 身分を確認できるもの[家族関係登録例規第600号に基づく]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者が出席した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及び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で提出する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6項の書類の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